번역학연구
2018 가을 제19권3호

식민지하 법정통역사에 대한 일고찰

유 정 화
(한국외대)

1. 서론

법은 가장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가치 중의 하나다. 그러므로 법을 바탕으로 한 판결은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현대 국가는 물론 제국주의나 식민통치하에서도 어느 시대 못지않게 '법'과 '법치'를 강조하는 까닭이다. 소위 '법에 의한 통치'와 '법에 근거한 판결'은 대개 진실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Bruner(2010: 71)에 따르면 법은 '진실'에 관심이 없다. 재판 속 법정 이야기 또한 근본적으로 신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정 속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같은 사안을 항상 다르게 말하고 있고 결국 이들 중 하나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사는 두 이야기 모두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데, 변호사가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정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결국 그의 이야기는 의뢰인에 치우친 수사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처럼 명백히 피아가 구분되고, 아군과 적군이 구분되는 상황에서,

www.kci.go.kr

재판관 못지않은 절대적인 객관성을 강요받는 존재가 있다. 다름 아닌 법정통역사다. 오늘날 법정통역(court interpreting)은 좁게는 공판 및 공판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역(이지은 2012b: 29)이고, 보다 넓게는 사법절차에서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구사 가능한 언어와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정,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 유치장 등 사법기능이 실행되는 기관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제공되는 통역서비스를 말한다(이재상 2007: 26).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정통역사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외국인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준언어를 구사하는 다른 소송당사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소송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법이 부여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최철 2009: 266-67), 이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준언어는 한국어이며 소송 당사자 중 하나인 수사기관은 한국어 구사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름 아닌 식민지 법정이다. 일제식민지하 한국법정에서의 표준언어는 일본어이고, 수사기관도 일본어 구사자이며 피고는 대개 한국인이었다. 게다가 법에 의한 규정이 없이도, 재판소에서는 대부분 조선어에 의한 소장(訴狀)은 채용하지 않았다(이연숙 1989: 3).

일본은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항하는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근대법'으로 포장한 식민지법과 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식민지배자의 입장에서 법정통역사는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피고인의 진술권을 보호하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선전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더욱이 전국 곳곳에 세워진 재판소에서는 독립운동으로 인한 재판이 끊이지 않아 필요한 법정통역사의 수도 적지 않았다. 식민지배자뿐만 아니라 식민지인 피고인에게도 법정통역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피고인을 제외한 판사와 검사가 대부분 일본인이고 재판 또한 일본어로 진행되던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리인이자 통역내용을 통해 재판과정을 이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였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법정통역사는 이렇듯 식민 통치자였던 일본에게 있어서나 대부분의 조선인 피고인 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일제강점기 법정통역사는 이처럼 식민지 법체계와 재판의 특징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무엇보다 국내 통번역학에 갖는 의미 또한 작지 않다. 지금껏 거의 연구된 바가 없

www.kci.go.kr

는 일제강점기 통역에 대한 공시적 관찰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조선시대와 근대를 이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통역사에 대한 통시적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사실상 국내 최초의 전문 법정통역사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법정통역연구는 사법통역연구의 하위 범주로,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일제강점기 법정통역 및 통역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일제강점기 통제도구로서의 언어정책에 대한 연구(이혜령 2010; 정진석 2004; 정근식 2005; 정근식, 최경희 2006)와 근대법학교육 관련 연구(김효전 2003; 장신 2013; 정긍식 2015)에서 나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근대사 연구에서 극히 일부분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김승태 2018; 양성숙 2009). 이에 본고에서는 근대 및 일제 강점기의 법제도 및 법학교육에 대한 자료와 당시 간행된 관보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일제강점기 법정통역과 법정통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식민지하 법정통역사가 오늘날 법정통역사와는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며, 이것이 사법통역 및 사법통역교육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적 법제도의 도입기에 법정통역사로 등장한 이들은 누구였는가?

둘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법정통역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가?

셋째, 실제 법정에서 이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것이 현대 법정통역사와 법정통역사 교육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2. 식민통치에서의 법과 언어

1910년 이후 법치를 통한 국민국가가 좌절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1) 국내 사법통역연구는 2008년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김진아 외 2008)를 시작으로 다수의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는 사법통역제도(류현주 2012; 이지은 2012; 이지은, 장원경 2016), 사법통역인의 역할(이유진 2015/2016b; 이지은 2015b), 사법통역 교육연구(이지은 2013/2015/2017b; 홍서연 2018)로 나눌 수 있다.

www.kci.go.kr

‘법을 통한 식민지배’였다. 식민통치법은 극히 침략적인 악법에 의한 지배라고 할 정도로 법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법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폭력적 억압적, 착취적 성격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김경균 1989: 10). 그러나 식민통치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법뿐만이 아니었다. 식민 사회에서 식민지배권력의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 아니라 식민통치권력이 식민사회를 통제하거나 억압, 배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김권정 2005: 131). 뿐만 아니라 피식민국은 식민국민들에게 자국의 언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문서를 비롯한 각종 행정체제가 식민국의 언어로 시행되기 때문에 피식민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적인 수용과 다름없다(Fabian 1986: 3).

낯선 식민지 법과 강제적 언어사용에 의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통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유죄 여부를 논하고 처벌을 결정하는 법정이다. 아래는 1919년 3월 8일 서문 시장과 3월 10일 남문 시장에서 두 차례 있었던 만세시위 운동으로 체포된 주민들의 재판과정에 대해 묘사한 글이다.

> 4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대구 만세시위 관련자 재판에 방청했던 미북장로회 선교사 부르엔(Henry Munro Breun)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
> “체포된 지 한 달이 넘은 4월 15일 우리 지역 주민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날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77명, 그 중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으며, 그들 중에는 목사 2명 장로 3명, 학교 선생님들과 수십명 이상의 학생이 있었다. ...(중략)... 법정은 붐비며 피고들이 법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고들은 밧줄로 묶여졌고, 몇몇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쇠사슬은 법정에 있는 동안 제거되었다.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깎았고 맨발이었다. 판사가 각 사람을 호명했다. 몇몇 경찰관을 제외한 모든 관리들은 일본인이었고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질문은 일본인 통역사가 한국어로 통역해야 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신문했다....
>
> 김승태(2018: 31-32)

위의 글은 식민지 재판의 특징적인 일면을 보여준다. 방청객을 제외한 재판

www.kci.go.kr

의 주요 참여자는 모두 일본인이나 이들은 소수였고, 법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피고인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언어는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였고, 판사의 신문도 역시 일본인 검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철저히 피식민인과 지배언어 중심이었다. 식민통치하 이중 언어 사용 체계는 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미우라 외 2005: 40). 식민지에서 식민지어를 구사하는 피식민인은 대부분 소수이다. 그러므로 식민통치를 명목으로 다수인 식민지인에게 지배언어를 강요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배언어를 습득한 식민지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배언어를 습득한 식민지인은 언어를 매개로 권력을 갖게 되지만 이들에게 허용된 권력은 대부분 제한적이다. 일제치하 사법부뿐만 아니라 법정통역사 구성에서도 이러한 한계와 위계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3. 일제시대 법정통역사

3.1 일제시대 법정통역사제도

본고에서의 식민시대 법정통역사란 일제 사법부에 소속되어 조선총독부 재판소 및 검사국에서 재판관련 통역을 맡은 사람들을 말한다. 일본은 본격적인 식민통치에 대비하여 한일병합이 있기 전인 1907년에 이미 한국 각 재판소에 통역관 및 통역관보를 설치하였다. 일제강점기 법정통역사는 아래와 같이 크게 통역관과 통역관보로 나눌 수 있는데 통역관은 주임관(3-9등)으로 고등관에 속하는 관리이고 통역관보는 판임관(1-4등)으로 하급관직에 속한다.[2] 같은 통역관 직임에도 재판소 통역관은 주임관 3호(5등 이하)로 주임관 2호인(4~8등) 중추원 통역관에 비해 등급이 낮았다(장신 2007: 42).

2) 장신(2007)에 따르면 일제시대 고등관은 일제의 관료 중 주임관이상을 일컫는다. 주임관의 관등은 3~9등이며, 그 위에는 친임관과 1~2등으로 구성되는 칙임관이 있다. 조선총독부 주임관 봉급표에 따르면 주임관의 등급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먼저 제 3호인 5등 이하의 고등관에는 재판소서기장, 재판소통역관이 해당되고. 다음 4~8등의 2호에는 통역관, 중추원통역관이 속한다.

www.kci.go.kr

<칙령 제12호 각 지방 및 각 항 시재판소 통역관 및 통역관보 설치에 관한 건(1907. 3. 22.)>
【勅令 第十二號】
각 지방 또는 각 항 시재판소 통역관 또는 통역관보 설치에 관한 건
제일조 각 지방급 각 항시재판소에 사무번간을 從ᄒᆞ야 통역관 혹 통역관보 일인을 置홈
제이조 통역관은 주임이며 통역관보ᄂᆞᆫ 판임이니 판사 또는 검사의 지휘를 承ᄒᆞ야 재판에 관ᄒᆞᆫ 일응 통역사무에 종사케 홈
제삼조 통역관 급 통역관보의 임면 징계ᄂᆞᆫ 법부대신이 행홈
관보 제3723호, 광무 11년(1907) 3월 26일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식민시기 법정통역사들은 법부대신이 임면 및 징계권을 갖는 사법관료였다. 재판소에는 통역관 외에도 칙령 제72호에 의해 '재판소 번역관 및 재판소 번역관보 관제'(1907. 12. 27.) 번역관과 번역관보가 별도로 존재했다.[3] 그러나 번역관직은 2년 후인 1908년 칙령 제88호 '재판소 번역관 및 재판소 번역관보 관제 폐지'(1909. 10. 28.)에 의해 폐지된다.[4] 한일병합 직후인 1910년 9월 30일에 발표된 재판소직원령에 따르면 통역관보 대신 서기와 통역생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폐지된 번역관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서기가 주로 통역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사법기구인 재판소의 경우 실제로 서기는 통역생의 역할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이혜령, 2010: 56). 이는 아래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동아일보 1927.9.16일자>
시본재판장을 선두고 역시 전일과 같이 배석판사 두 사람이며 검사와 서기 두 사람과 첫 공판에 통역을 하든 左左木 통역을 변하여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植山서기가 통역생으로 입정하였다.

재판소 통역관제가 설치된 1907년에는 각 재판소에 1인의 통역관(통역관보)이 있었다면 한일병합 직후에는 그 수가 크게 늘어 1910년 일제 조선총독부 재판소에는 통역관은 4인, 서기와 통역생은 무려 429인에 이르렀다.

3)『관보』1907년 12월 29일자.
4)『관보』제4517호, 1909년 10월 29일자.

www.kci.go.kr

<조선총독부 관보 1910.9.30일자>
조선총독부 재판소 직원정원령이 공포되었다. 조선총독부재판소 및 검사국 직원의 정원은 판사 261인, 검사 63인, 서기장 4人, 통역관 4인, 서기, 통역생 429인이다.

이들의 수와 연도별 변화는 아래의 표(이혜령 2010)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5)]

〈표 1〉 일제식민시대 법정통역사

연도	통역관		서기(통역 겸직)		통역생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1910	4	-	208	76	46	99
1911	4	-	201	74	45	93
1912	4	-	197	60	38	89
1913	4	-	199	57	38	94
1914	4	-	207	76	38	79
1915	4	-	225	36	36	71
1916	4	-	269	36	36	66
1917	4	-	314	34	34	61
1918	4	-	373	28	28	57
1919	4	-	394	169	26	47
1920	4	-	392	182	21	44
1921	4	-	403	230	22	-
1922	4	-	415	232	21	-
1923	4	-	481	232	20	-
1924	4	-	437	209	20	-
1925	4	-	448	209	19	-
1926	4	-	453	209	17	-
1927	4	-	469	209	12	-
1928	4	-	473	209	13	-
1929	4	-	476	209	15	-
1930	4	-	483	208	15	-
1931	4	-	464	201	10	-

5) <표1>은 이혜령(2010: 65-66)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27,1929,1942,1944)의 사법직원관련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식민지 조선의 연도별 주요 사법직원 인원'에서 법정통역담당자에 대한 자료만을 발췌한 것임.

www.kci.go.kr

1932	4	-	472	213	11	-
1933	4	-	477	214	11	-
1934	4	-	479	217	12	-
1935	4	-	491	222	12	-
1936	4	-	531	258	11	-
1937	4	-	542	258	11	-
1938	4	-	813	-	11	-
1939	4	-	838	-	11	-
1940	4	-	884	-	11	-
1941	4	-	924	-	11	-
1942	4	-	906	-	11	-

이혜령(2010)의 표에는 통역관이 모두 일본인이고 한국인 통역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1939년 10월 4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 “재판소 서기 오필린이 평양복심법원 검사국 통역관에, 군속 최석운이 평북도리사관에 임명되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한국인 통역관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인을 포함한 통역관의 수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서기의 경우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 그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1919년을 기준으로 크게 증가하는데 아마도 3 1 운동으로 인해 재판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1938년 이후로 일본인 서기가 300명가량 증가하는 반면 한국인 통계는 보이지 않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일본인 집계에 함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6] 전년도인 1937, 1936년의 경우 일본인과 한국인의 수를 모두 더하면 대략 1938년 일본인 서기의 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반면 통역생의 경우 일본인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 1942년에는 1910년과 비교해 약 1/4 수준이었고 한국인 통역생의 경우 1921년 이후로는 집계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인 서기가 1921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통역생이 서기겸 통역사로 승진하였거나 한국인 서기의 경우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을 합친 서기집계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외에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귀국 후

6) 이혜령(2010)은 전임 통역생은 일본인만 임용되었으므로 이들만이 집계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앞의 연도에 한국인과 일본인이 따로 집계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www.kci.go.kr

재판소나 검사국에서 서기로 일하며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7]

오늘날 법정통역은 의료통역과 더불어 커뮤니티 통역에서 가장 통역하기 까다로운 분야로 꼽힌다. 근대적 사법제도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오늘날과 같은 전문적인 통역훈련도 없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연 당시 법정통역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생기기 쉽다. 이에 식민통치 초기부터 수백 명에 달한 이들이 어떻게 법정통역사로 등장했고 통역에 필요한 외국어와 법률지식은 어떻게 습득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3.2 일제 강점기 법정통역사 교육

3.2.1 법관양성소

일제 식민통치가 시작되기 전 대한제국은 1895년 근대적 법률가 양성을 목적으로 당시 법원이었던 평리원에 법관양성소를 설립했다. 법관양성소는 1909년 법학교로 이름을 바꾼 후 1910년 8월 경성전수학교로 개편되어 11년간 운영됐다. 이후 1922년 4월 다시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편되어 해방까지 이어진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근대적 법률교육의 기원은 법관양성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8]

한편 법관양성소의 교수진을 살펴보면 근대개혁기 프랑스어 통번역교육학교였던 법어학교출신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최병옥(崔炳玉), 김정식(金廷植), 정기학(鄭基學), 이신우(李信宇), 방승헌(方承憲) 등이 대표적인 법어학교 출신으로[9], 법관양성소에 법어학교 출신이 많았던 것은 당시 정부가 프랑스인 크레마지(Laurent Cremazy: 1837-1909)를 근대법률고문으로 초빙하였던 것과 관계가 있다.[10] 최기영(2001)은 당시 사법부가 1901년 3월부터 법어학교 출

---

7) 대표적으로 이인(李仁, 1896-1979)이 있다. 이인은 일본대학 법과를 졸업한 후 경성지방법원 서기로 근무하다 이후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했다(한인섭 2012).

8) 법관양성소 외 사립학교인 보성학교(1904년 설립), 양정의숙(1905년 설립) 등에서 법률을 교육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들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관립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음.

9)『대한제국관원이력서』p.520, 554, 676, 689.

10) 최종고(1982)에 따르면 당시 크레마지 외에도 뮐렌도르프, 데니, 르젠드르, 그레이트

www.kci.go.kr

신 가운데 우수한 학도를 선발하여 크레마지에게 법학을 배우도록 한 것과 당시 졸업시험에 '프랑스어', '프랑스 법률'이 포함된 것, 또한 프랑스 법률을 번역한『法國律例』[11]를 교재로 사용한 것에 비추어 당시 근대 서양학법은 프랑스 법률 중심이었고, 따라서 프랑스학교인 법어학교출신의 교수진들이 크레마지의 수업을 통역하거나 프랑스 법률을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흐름은 일본의 식민통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크게 변화된다. 1907년 12월 반포되어 1908년부터 시행한 칙령 제 53호 '법관양성소 관제'에 의하면, 전임관으로 소장 1인, 교수와 조교수 각 3인, 간사 1인, 그리고 번역관과 번역관보 및 주사 각 2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12] 번역관의 존재는 일본인 교관의 임용을 전제로 한 조치로 12월 27일자로 아키야마유키에(秋山幸衛)가 조교수에 발령되고, 이어 1908년 1월 1일자로 소장에 법부 참여관으로 있던 노자와 다케시노스케(野澤武之助)가, 간사에 엄문양(嚴問亮)이 임명되었다(최기영 2001: 67). 한편 규정에는 번역관과 번역관보를 각 2인을 둔다고 하였으나 번역관으로 김교명(金敎明)과, 김돈명(金敦明)이 임명된 것만 확인된다.[13] 이들은 번역관겸 조교수를 역임하다 1911년 법학교의 조교수로 임명된다.[14] 입학자격,시험, 연한, 교과목의 변화를 기준으로 시기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하우스 등의 외국인 법률고문이 있었다.

11) 1903년(광무7) 법관양성소에서 사용한 필사본 교재. 겹장본 선장본. 앞표지에 '刑律'(형률)이, 내표지에 '法國律例 刑律'(법국율례 형율)이 적혀 있음. 내면의 측면 접힌 부분에 '法官養成所'가 붉은색으로 찍혀 있음. 최종고(1982)에 따르면 법어학교 출신 방승헌과 이 책의 번역과 통역에 일조하였다.
http://culture.go.kr/data/data/view.do?url=http%3A%2F%2Fwww.much.go.kr%2Fmuseum%2Fnrms%2Fview.do%3Fidnbr%3DPS01002025001-004084-00000&contextName=http%3A%2F%2Fwww.much.go.kr%3A8983%2Fopenapi%2Frdf%2FHoldings.rdf&category=B05

12)『관보』1907년 12월 10일자

13)『관보』1909년 11월 1일자, 대한민보 1909년 11월 12일자

14)『관보』1908년 3월 4일자 서임급사령 "兼任法官養成所助敎授法官養成所繙譯官 金 敎 明"

www.kci.go.kr

〈표 2〉 법관양성소 입학 및 교육내용의 변화

	1895	1903-1904	1906	1908
자격	20세 이상 입학시험에 합격한자 및 현직관리	20세이상 35세 이하	17세이상 35세 이하 남자, 관립일어학교나 관립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 학력소지자로 품행방정 및 신체건장한 자	17세이상 23세 이하의 남자
입학시험	한문작문, 국문작문, 조선역사, 地誌大要(지리학)	한문독서 및 작문, 국문독서 및 작문(1903) 1904 추가, 본국지지問對, 본국역사問對, 1905 산술問對	국한문 독서, 작문, 산술, 내국역사問對, 내국지지問對	
수업연한	6개월	3년	2년	3년
교과목	법학통론,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기타현행법률, 소송연습	법학통론,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국제법, 상법, 현행법률, 산술, 작문, 외국율례	형법대전, 명률, 무원록(無寃錄,법의학), 법학통론,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학, 국제법, 경제학, 재정학, 일본어	법학통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국법학, 행정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명률, 이재학,실무연습, 일본어, 한문, 수학, 부기, 체조

칙령 제49호「법관양성소규정」(1895. 3. 25.), 법부령 2「법관양성소규칙 (1904.7.30.), 칙령 21호「법관양성소관제」(1905.2.26.), 법부령 1「법관양성소령 (1908.1.17.)

1908년 일본인 소장과 교수가 임명되면서 교과과정도 변화하게 된다. 교수과목에는 여러 법 과목 뿐 아니라 일본어, 한문, 수학, 부기, 체조 등의 과목이 추가된다. 이는 식민지시기 다른 학교의 교과과정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주요 사법 인력은 대체로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도울 보조인력이나 법 이외에 다른 분야에도 활동할 수 있는 실무적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

www.kci.go.kr

었음을 알 수 있다. 입학자격은 관립일어학교나 관립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품 1909년 10월 28일 칙령 제 84호로 법학교 관제가 공포되면서 법관양성소는 폐지되었다. 법관양성소가 폐지되기까지 양성한 졸업생은 1895년 11월 10일, 제 1회 47명, 1896년 4월 22일 제 2회 38명, 1904년 7월 제 3회 25명, 1906년 1월 제 4회 20명, 1908년 1월 제 5회 22명, 1908년 12월 27일 제 6회 54명이다(최경옥 2007: 5). 대한민보 1909년 10월 2일자 기사에 따르면 1908년까지 졸업생의 총합은 모두 210명으로 판사 21명, 검사 3명, 변호사 12명 외에 재판소 서기가 무려 75명에 이른다. 졸업생의 약 1/3에 해당하는 인원이 재판소에서 통역 및 서기로 활동한 것이다. 설립당시에는 수학기간이 6개월로 단기인력양성을 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3년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아 당시 법정통역사들은 법관양성소라는 근대적 법학교육기관에서 장시간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사법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법관양성소는 이후 법학교로 개편되는데 설립목적이나 직원구성이 법관양성소와 거의 동일한 것(김효전 2010)으로 보아 이름만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법학교관제에는 번역관직이 보이지 않아 번역관직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15]

3.2.2 경성전수학교

앞서 언급한 법관양성소는 오늘날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부 소속이었으나 1909년 법학교로 변경되면서 학부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법학교는 2년 후인 1911년 다시 '경성전수학교'로 명칭이 변경된다(前경수학교).[16] 조선총독부령 제115호, (1911.10.20.)에 따르면 경성전수학교의 설립목적은 '조선인 남자에게 법률과 경제에 관한 지식을 교수하여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양성함'이고 수업연한은 3년이었다. 이후 1916년 4월 1일 칙령 제 26호 '경성전수학교규정'의 공포로 경성전수학교는 조선총독부 전문학교로 지정된다. 이전과 달리 '조선인 남자'라는 문구가 빠졌는데 김호연(2011)은 이에 대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학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추측했다.

15) 『관보』 1909년 10월 29일자.
16) 『조선총독부관보』 1911.10.20.일자

www.kci.go.kr

〈표 3〉 경성전수학교 교과과정 및 매주교수시수표(1911)

교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수신	1	수신의 요지	1	좌동	1	좌동
국어(일본어)	3	해석, 회화, 받아쓰기	2	좌동		
법학통론	4	법학통론				
헌법 및 행정법	2	헌법, 행정법	2	좌동	2	행정법규
민법	6	제1편,2편	6	제3편	4	제4편,제5편
상법			4	제1편 내지 제3편	4	제4편,제5편
형법	3	총론	2	각론		
민사소송법			2	제1편	4	제2편 이하
형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국제공법					2	평시, 전시
국제사법					2	국제사법
경제학	4	경제학	4	상사요항,은행론	2	재정학
실업연습	6	공용문,상용문,부기, 주산	6	공용문,상용문,부기,주산,통계	6	좌동
체조	2	보통체조	2	좌동	2	좌동
계	31		31		31	

조선총독부령 제 115호(1911.10.20.)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용문 작성이나 부기, 주산 등의 실업연습이 기타 법 관련 과목보다 시수가 가장 많고, 일본어 수업이 3년 동안 계속 교수되었다는 점, 경제학의 비중도 적지 않았던 점이 경성전수학교의 설립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성전수학교일람』(1925)에 수록된 졸업생 진로는 다음과 같다.

〈표 4〉 경성전수학교 졸업생 진로

직종	(전)경성전수학교	경성전수학교	계
판사	10	19	29
검사	4	4	8
재판소 서기겸 통역생	22	93	115
행정관청	18	17	35

www.kci.go.kr

경찰관서	5	4	9
교원	0	2	2
변호사	17	5	22
유학	2	9	11
은행원, 회사원	9	33	42
가업	46	23	69
사망	10	8	18
전체	143	217	360

『경성전수학교일람』(1925) 김호연(2011: 13)

위에서 보듯 경성전수학교에서 판사, 검사, 재판소 서기겸 통역생, 변호사 등 사법계로 진출한 졸업학생은 총 174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약 절반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재판소서기 겸 통역사는 115명으로 사법계로 진출한 졸업생의 66%이고 전체 졸업생 중에는 31%에 이른다. 이에 경성전수학교 졸업생하면 으레 재판소 서기를 떠올렸다(장신 2013: 185). 한편 재판소 서기겸 통역생들은 판 검사직이나 군수 등의 기타 행정직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아래는 그 중 일부의 예이다.

<조선총독부관보 1912.12.26일자>
조선총독부 검사 洪承瑾(홍승근)을 조선총독부 판사에,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겸 통역생 林英贊(임영찬)을 조선총독부 판사에, 안병헌을 조선총독부 군수에 각각 任하다.

<조선총독부관보1914.1월.17일자>
조선총독부재판소 통역생 겸 서기 리우익, 동 리명섭, 동 리홍종을 조선총독부판사로 임명하다.

<조선총독부관보 1916.11.24일자>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겸통역생 민병성을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 검사로 임명하다.

서기 겸 통역생들이 이처럼 판사나 검사, 그리고 행정직으로 다수 임용된 것은 이들이 경성전수학교에서 다년간 근대 법률지식을 수학한 전문법률가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www.kci.go.kr

3.2.3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전수학교는 2차 조선교육령으로 인해 1922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제 학교관제' 공포로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출범한다.[17] 경성법학전문학교규정에는 교육목적 조항이 없다가 1940년 4월 1일에 신설되는데[18] 이에 따르면 '법률에 관하여 고등 학술을 교수하며 특히 황국의 도에 의하여 국체관념 함양 및 인격 도야에 유의함으로써 국가에 필수적인 인재로서 부족함이 없는 충량유위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정재철(1989: 44), 김호연(2011: 17)은 전신인 경성전수학교와 교육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은 '조선교육령에 기초하여 법률 및 경제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서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하는 것'에 있었다고 했으나 1940년 전까지 설립목적은 규정에 없다가 1940년에서야 등장한다. 아마도 일제 황국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940년을 기준으로 교육목표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입학자격은 첫째,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둘째, 전문학교입학자격검정규정에 의한 시험 통과자, 셋째,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였으며 '특과(特科)'를 두어 제 1차 조선교육령에 의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도 입학할 수 있었다. 입학시험은 신체검사, 구두시험, 국어, 한문, 영어, 수학, 역사 등의 학력시험으로 구성되었다(정긍식 2015: 115). 수업연한은 3년이었다.

〈표 5〉 경성법학전문학교 학과목과 수업시수(1922)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합계
수신	1	1	1	3
국어(일본어)	4	2	2	8
영어	3	3	2	8
법학통론	2			2
헌법	2			2
행정법		2	2	4
민법	10	7	4	21
상법		6	3	9
파산법			1	1

17) 조선총독부칙령 제151호, 1922.3.31.
18) 조선총독부법령 제134호, 1940.5.23.

www.kci.go.kr

형법	4	3		7
민사소송법		2	5	7
형사소송법			3	3
국제법			3	3
경제학	4	4		8
재정학			2	2
상업학			(3)	(3)
연습			2	2
체조	2	2	2	6
계	32	32	32(3)	96(3)

조선총독부령 제 49호, 1922.4.1.

아래는 경성전수학교와 경성법학전문학교에서 배출한 법정통역사(재판소 서기겸 통역생)의 수를 비교한 표이다.[19]

〈표 6〉 경성전수학교와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생의 진로

	(전) 경성전수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계	
	1925	1936	1925	1936	1925	1936	1925	1936
판사	10	3	19	19	-	7	29	29
검사	4	1	4	2	-	1	8	4
재판소서기겸 통역생	22	3	93	28	22	151	137	182
행정관청	18	10	17	7	13	195	48	212
경찰관서	5	2	4	1	1	32	10	35
교원	-	-	2	2	-	1	2	3
변호사	17	25	5	26	-	16	22	67
은행,회사원	9	4	33	18	9	54	51	76
금융조합	-	1	-	2	-	40	-	45
신문기자	-	-	-	-	-	2	-	2
만주국관리	-	-	-	2	-	19	-	21
유학	2	-	9	-	5	11	16	11
家事종업	46	70	23	86	26	158	95	214
사망	10	24	8	24	1	29	19	77
계	143		217		783		437	1,076

장신(2013) p, 13 <표 1>에서 발췌

19) 장신(2013) p.13 표 1 '경성전수학교와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생의 진로' 중 통역사 관련 부분만 발췌하였음.

www.kci.go.kr

위의 표를 보면 경성전수학교와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다름 아닌 법정통역사였다. 두 학교에서 배출한 법정통역사가 1925년 100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은 1936년에는 182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식민지 법정통역사의 다수가 경성전수학교와 경성법학전문학교 출신이었고 이 두 학교가 당시 법정통역사 주 양성 및 교육기관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3.3 모의재판

1930~1940년대 신문기사 중 모의재판극을 다룬 기사를 찾을 수 있다. 모의재판이 아닌 모의재판극이라고 한 것은 특정한 이야기(문학작품)들을 각색해 무대에 올렸기 때문으로 짐작되는데 이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법리적 문제를 제기할 만한 문학작품이나 실제사건을 극화한 것들은 모두 모의재판극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김경수 2016: 156).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법학교가 중심이 되어 공연한 모의재판극에 대한 기사가 다수 발견된다. 총 13차례 열린 모의재판극 중 경성법학전문학교가 개최한 모의재판극이 5차례나 되는 것을 보면 당시 경성법학전문학교가 모의재판극 공연에 상당히 열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의재판극은 학생들이 중심이 된 공연이었으나 언론에 자세히 보도된 것을 보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20] 당시 신문은 모의재판극에 대해 간단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의재판극에서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역할을 한 학생들에 대한 감상평을 싣기도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모의재판극에 통역사가 항상 등장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1940년 1월 30일 오후 7시에 열렸던 경성법학전문학교 주최 모의재판극에 대한 기사이다.

> <동아일보 1940. 2. 3일 기사>
> 일월삼일일 오후 7시 부민관에서 열린 경성법정학교학생회주최 제 2회 모의재판극을 보고 많이 감동되는바 있어 자에 약간의 감상을 적기로 한다.

---

20) 동아일보 1936년 8월 2일자 기사에는 '평양학생 모의재판 성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공연시간 전부터 관중이 몰려들어 천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www.kci.go.kr

....(중략)...
민중으로 하여금 법에 대한 誤念을 시정하고 이에 애착을 갖게 하자면 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성질과 내용과를 정당히 이해시키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근래 법의 민중화라는 것이 그 줄기 당국으로부터 부르짖은바 되어 있는 이 때 동학생회의 이번 모임과 같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재판극은 실로 상기한바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일반민중에게 비익(裨益)되는 바 많았다고 생각되매 실무자적 입장에 있는 한사람으로 충심으로 찬동의 의를 표하는 바이다. 취하여 동연출 전반에 관하여 대약평을 해보기로 한다.
....(중략)....
개인적으로 말해보자면 재판장 김광호군은 음성은 좋으나 어미가 분명치 못한 때가 있었고 검사 김규헌군은 논리일관한 준열한 논고가 웅변조로 토하매 매우 검사다웠으니 약간 심파의 기분을 느끼게 함이 있었다. 변호사역 목진국군은 대략무결이나 변호의 논리가 좀더 명확일관하지 못함이 유감이었다. 통역역 남용희군은 말이 너무 빠르고 좌자(坐姿)를 앞으로 구부리고만 있는 것이 부자연하였고, 배석판사역 김종환군은 심리도중 자주 검사를 돌이켜보는 것은 전연불필요한 짓이었다...(하략)

위의 감상평에는 모의재판극의 목적을 법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법의 성질과 내용을 이해시키고, 법의 민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의재판극은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적 효과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실제 재판과정을 이해하고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습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도구이기도 하다. 김경수(2016: 156)는 모의재판은 기존의 사회현실을 비준하는 법의 확충을 위해, 그것이 실현되는 재판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 현행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적 법리를 탐구해 나아가는 특별한 사회적 문화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모의재판은 법률가들의 교육과 양성에 매우 긴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어 실제로 거의 모든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과과정의 하나로 마련하고 있다고 모의재판의 교육적 기능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감상평은 그 다음 날짜 기사에 이어지는데 앞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출연자들과 그 배역에 대해 평하고 있다. 여기에도 통역사에 대한 감상평이 있다.

<동아일보 1940.2.4일자>
다음 재판장면을 보건대는 그다지 훌륭한 물건이 못되었다...(중략)..

www.kci.go.kr

> 이에반하여 변호사역 김규면군은 웅변적인 변론을 終始 열과 성으로서 부르짖으매 그 태도가 훌륭하엿으나 끝에가서 사족에 빠지고 용장해지매 변론의 효과를 멸살시키고 관중들의 동정적 감정을 절정에서 퇴실시키는바 잇었다....(중략)...그렇게 논할만한 변호사로서의 사실적 재로는 충분하였을 것이다. 통역역 최세준 군은 매우 좋았다. 그리고 최후의 판결언도 칠년은 재판관으로서 온당하다고 하겠다....(하략)

위 기사는 비록 실제 재판이 아닌 모의재판극에 관한 것이나 이를 통해서 식민지 법정의 풍경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미 학생들에게나 대중에게 식민지 법정에서 통역사의 존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존재였으며 더 나아가 재판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역사의 법정 통역 능력 또한 사람들의 주목과 평가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식민지 통역사의 가시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4. 식민지 법정통역의 실제와 법정통역사의 가시성

4.1 식민지 재판에서 드러나는 법정통역사의 실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수많은 재판 중 일부는 당시 신문에도 상세히 보도되었다. 재판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기사에는 법정통역사의 존재감도 선명하게 드러난다.[21] 아래는 3.1운동을 주도하다 검거된 손병희 재판에 대한 기사이다.

> <동아일보 1920.8.20일자>
> 재판장은 손병희 이하 48인과 김현묵이하 28인의 사건에 대하여 본건 공소는 어떤 것이든지 모두 수리치 않는다고 선언한 후 재판장이 읽고 통역생이 번역하여 약 2시간 동안이나 계속하여 판결서를 읽었다. 원래 논리가 어려운 법률론이요 읽기가 어려운 까닭에 그만큼 조선말이 능란하다는 등정통역생도 때때로 땀빠지는 구절이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이 지리한 두

21) 일제치하 신문 중 법정통역과 재판에 대해 동아일보가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고 있고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음.

www.kci.go.kr

> 어시간 동안에 방청석에서는 어제 저녁 이래로 표를 얻기에 단잠을 자지 못한 까닭인지 폭폭 조는 사람도 없지 아니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수많은 재판이 있었다. 재판소에는 위의 기사와 같이 한국인 청중 앞에서 한국어로 번역문을 읽고 통역하는 일본인 통역사의 모습이 등장한다. 한국어를 잘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지식의 부족으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통역사의 상황이 청중의 시각을 통해 선명하게 전달되고 있다. 난해한 법률용어로 인한 법정통역의 어려움이 전해지는 대목으로, 오늘날에도 법률용어는 사법통역의 어려움으로 꼽히는 부분이다. 아무리 외국어에 능하다고 해도 법률의 내용과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법정통역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역설적으로 이것은 전문적인 법정통역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래는 안성에서 발생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기사로, 당시 법정통역사 역할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동아일보 1920.7.24일자>
> 제2일의 무 送致(송치) 대공판 안성사건 최은식외 160인
> ...재판장으로부터 전일에 계속하여 개정하다 선언한 후 피고 일동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을 점검하는데 그 중에 피고 이성렬은 신병이 위중하여 파리한 몸 여윈 얼굴에 아픈 빛을 띄이고 자주 앓는 소리를 발하는대 머리는 깎지 아니하였음으로 베망건을 쓴 아래로 거칠은 터럭이 어지러히 흩어졌다. 재판장의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지긋지긋한 음성을 발하며 엎드려 있는데 여러 번 부르는 소리에 기운 없이 일어나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재판장 앞으로 가는 모양은 누가 보든지 그의 옥중병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치 못하겠다. 그 다음으로 피고를 점검하여 내려가다가 피고 오정근은 귀가 먹었다고 대답하매 등정 통역생은 "무엇 귀가 먹었어? 하고 통역생도 일어서 그 피고 앞으로 바싹 나가서 피차에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문답하는 모양은 방청인 일동이 웃음을 금치 못하였고...

위 기사에서 통역사는 피고인의 대답을 듣고 직접 질문하여 그 말의 사실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통역사가 고유의 업무인 통역업무 뿐 아니라 재판관이나 검사 등 다른 구성원이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www.kci.go.kr

것으로 당시 법정통역사의 역할이 통역행위에만 제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기사에서는 법정통역사가 재판과정이나 법률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동아일보 1920.9.21.일자>
> ..피고 최린을 부르매 최린은 대답하고자 일어섰는데 피고중에서 이종일이가 일어섰더니 피고측의 질문본안을 심리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소. 사실심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요? 하고 말을 붙이매 통역생은 판사에게 통역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알아보겠다는 말이지". 하매 그러면 사실을 알아본 후에 결정하겠다는 말인가요 하고 또 묻자 이때에 피고중에서 오화영이 일어서며 공소불수리문제는 집어치워버리고 본안을 심리한다면 사실상 공소를 수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통역생은 다시 "어떻게 되던지 사실을 심리한 후에..." "그러면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괴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것은 아니요" "내 생각에는 지방법원 판결을 파괴하는 것 같소"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 그렇게 생각하오" 하고 말하며 즉시 심문을 개시하여 먼저 최린을 심문하기 시작하여
> "별로 형벌을 받은 것이 없는가" 하고 일본말로 물으매 피고는 못들은체하고 서 있다. "피고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 일본말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닌가" "자세히 모르오"

위 기사 하단에서 피고는 통역생과의 개인적인 질의응답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일본어 심문에서는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당시에는 이 외에도 피고인이 외국어인 일본어 사용 자체를 거부하고 한국어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식민지인의 입장에서는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이에 저항하고자 하는 당연한 행위일 수 있으나 진술을 독촉하는 사법부와 이를 거부하려는 피고인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해야하는 통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난처한 일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법정통역사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일제강점기 법정통역사에게는 식민통치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맞부닥뜨리는 어려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기사에서는 일본어뿐 아니라 일본의 연도표기 방식과 관련하여 발

www.kci.go.kr

생한 갈등에서 통역사가 개입하여 조정을 시도했던 모습이 드러난다.

<동아일보 1921.11.26.일자>
보합단체 이회공판
.....
이종영은 재판장 앞에 나가자마자 법정안에 난로를 피워 정신이 없으니 문을 좀 열어달라하여 창문을 연후에 매우 강렬한 태도로 자기는 원산에서 미국인이 경영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 다년 그 학교 교사로 있을 동안에 피고 조상백을 알게 된 말을 대답한 후 재판장은 대정사년 아라사 해삼위와 중국상해를 돌아 조선으로 돌아오기는 대정칠년이지 하고 물으매 피고는 내가 삼사년 전에 해삼위와 상해를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대정 몇 년이라는 일본연대는 내가 알 필요도 없고 기억도 못한다고 하매 통역하는 서기 이화종씨는 사실만 통역하고 년호에 관한 말은 통역하지 아니하엿더니 재판장은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피고가 무슨 년호에 관한 말을 하엿으냐 물으매 이씨는 그제야 자기는 대정년호는 상관없으니까 모른다 말하엿다 하매 재판장은 금시에 열화가 치로하여 피고를 내려다보며 대정년호를 모른단 말이냐 알아도 말할 수가 없느냐 그것부터 말해보자 하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다시 이어서 그렇게 몰상식하면서 어떻게 신문기자를 다니었으냐 하매 피고는 신문기자는 고사하고 그에서 더한 일을 하더라도 모르는 일은 모른다 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정안이 일시는 매우 소란하였었다 .

위의 기사에서 대정년호는 일본의 연호방식이다. 피고는 일본 방식의 연도를 묻는 재판관에 저항하기 위해 일본연대에 대해 알 필요도 없고 기억도 못한다고 답하였으나 통역사가 이 부분을 생략하고 통역하였다. 피고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경우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법정에서라면 통역사가 자의적으로 피고의 진술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식민치하 통역사들은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술 내용을 수정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식민지 재판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식민지배국에 대한 저항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 피고인에 대한 염려에서인지, 원활한 재판을 위한 직업적 의무감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결국 이 모두는 식민통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비롯된 것들이었다.

www.kci.go.kr

한편 식민지하 법정에서 통역사는 식민지배국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특별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아래는 식민통치 기간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사건중의 하나인 연통제 사건관련 재판으로 식민지 재판에서 법정통역사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22]

<동아일보 1920년 8월 30일 기사 '세인(世人)을 경해(驚駭:크게 놀람)케 한 연통제 공판'>
이규철 심문
간도에서 조선독립 운동을 한 일이 잇는가 - 잇소
언제까지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하얏던가 - 작년팔월까지이요
그때문에 재류금지를 당하얏던가 - 그럿소
엇더케 운동을 하얏는가 -간도에서 운동한 일은 간도령사관에서 조사를 당한 일이니 이곳 재판소에서 물을 필요가업소
필요가 잇스니 말하라 - 디나간 일이 되여서 다 잊엇소
이렇게 말하매
통역이 "말할것은 썩 말하지 웨 우물주물하는가" 하매
"여보 당신이 내게 그럿케 하라 명령을 하오 통역이면 통역이지 말하야라 말어라 할 권리가 무엇이오"하고 눈을 부릅뜨고 긔운을 내 이어 말한즉 통역은 다시
"명령이 아니라 뭇는 말을 잘 대답하여야 나도 통역을 하지 아니하겟소
내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요 하면서 피고가 다시 호령하니 통역은 무안하야 한참통안 아모말도 업다가
"여보 나는 조선사람 이지마는 친일파가 되여버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안저서 당신네 재판 하는대에 통역을 하지마는 당신은 당신의 톄면을 차리어서 묻는 말을 잘 대답하여야 아니 하겟소
한즉 피고는 또 성내인 목소리로 체면을 차리다니 내가 이곳을 대접 받으러 온 줄 아오
조선말 모르는 재판장은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고 통역에게 무슨 말인가 물은 즉 통역도 한편으로 성도나고 한편으로 무안도 하야 "별말 아니

22) 연통제는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가 1919년 7월 10일 공포한 국내 비밀 행정조직으로 1919년 9월 임정의 평안남도 특파원 유기준(劉基峻)이 평양 기성의원에서 체포되면서 알려져 김린서(金麟瑞)와 박원혁(朴元赫) 등을 비롯해 47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7~8개월 동안 혹독한 취조를 받은 후인 1920년 8월 4일부터 재판에 부쳐졌고 동아일보와 신한민보 등에 공판과정이 상세히 보도됐다.

www.kci.go.kr

오”한즉 재판장이 피고에게 향하여
내가 조선말을 모르지마는 피고의 태도를 보니 신성한 법정에서 불오한 활동을 마구하고 그렇게 묻는 말을 잘 대답하지 아니하려면 피고에서 퇴정을 명하여 결석판결을 행하겠다. 한즉
...(하략).

독립운동을 하다 검거된 사람들 중에는 일본인 판검사 앞에서 모든 행위에 대한 진술 및 재판을 부인하는 일이 많아 통역사가 피고에게 진술을 재촉하거나 설득하는 일이 빈번했다. 위의 기사 역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통역사에게 분노하는 상황, 혹은 그 과정에서 통역사가 자조적인 고백을 쏟아내는 모습 등은 아마도 식민지하 법정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이었을 것이다.

식민지에서 이중언어자는 위에서처럼 종종 식민지인들의 분노의 대상인 한편 피식민자들에게는 의심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혜령(2010: 92)은 이를 식민지 사회에서의 이중언어자가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거나 읽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통역’의 능력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식민시대나 냉전시대에서 ‘통역’이 가능한 이중언어자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배신자 혹은 첩자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선명한 존재감만큼이나 식민지 통역사들만이 감당해야했던 특별한 어려움이 존재했던 것이다.

4.2 법정통역사의 가시성

법정통역은 사법통역의 하위범주로서 흔히 커뮤니티 통역으로 분류된다. 커뮤니티 통역은 통역사의 가시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로, 흔히 커뮤니티 통역사는 조력자, 대리인, 중재인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법정통역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역할보다는 법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화를 이른바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전달’하는 도관의 역할과 통역사의 중립성이 강조된다. 무엇보다 오역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단 법정통역뿐만 아니라 모든 통역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수행된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의사소통행위에는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간극 외에도 사회제도, 사고방식,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미상의 간극이

www.kci.go.kr

존재한다. 법정통역 역시 사법부와 피고인 간의 의사소통행위이며 따라서 온전한 의미 전달이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 무시한 '도관'에 가까운 통역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의사소통이 실현되기 어렵다. 실제 다년간 법정통역사로 일한 전문통역사들도 판사의 허락을 받아 발언을 첨가하거나 설명하는 경우 외에도 불가피하게 재판과정에서의 발언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23] 뿐만 아니라 사법통역 연구 중에도 사전정보의 제한으로 인한 맥락파악의 어려움, 법률용어, 방언, 사법기관의 시간 압박 등의 이유로 도관의 역할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결과도 있다(이유진 2015). 법정통역만큼이나 통역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의료통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학자들이 통역사에게 주어진 중립성과 비가시성의 역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Berk-Seligson 1990; Wadensjo 1998; Metzger 1999; Davidson 2000; Roy 2000). 이들은 통역을 상호작용으로 보고 통역사는 상호작용의 필수적인 파트너, 즉 공동건설자로 설정하여 기계적이거나 비가시적이라고 개념화된 통역사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인 공동참여자로 재정립한다. Angelelli(2009)역시 통역사의 가시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그에 따르면 가시적 통역사란 언어적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동시에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다른 당사자들과 현실의 의미를 공동 창조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갖춘 통역사의 모습을 의미한다 (Angelelli 2009: 31). 그러나 사법시스템의 엄격함과 사법구성원의 권위는 통역사로 하여금 항상 이러한 이질성에 대해 스스로 무감각해지거나 애써 무시하도록 만든다. 통역사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은 채 여전히 도관의 역할이 이상적인 역할이라고 강요하는 이상, 통역사는 재판의 온전한 참여자로서가 아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비가시적 존재로 남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제치하 법정통역사들은 근대적 법치주의로 포장한 식민지배정책덕분에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유창한 외국어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비록 전문적인 통역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법정통역사로 활약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법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재판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지되었다.

---

23) 대표적으로 미정부 공인 법정통역사가 법정통역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상세히 기록한『미국 법정 블루스』(2004)를 들 수 있다.

www.kci.go.kr

5. 나가는 말

근대적 법률이란 근대성을 매개하는 대단히 유력한 장치이나 필연적으로 식민지인들은 입법과 사법권에서 본질적으로 소외된 채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식민지 법을 현실적인 국가의 이성으로 수용하게 될 조건과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이경훈 1998: 293). 게다가 일제는 제 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국어(일본어)를 사용하는 자'와 '국어(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며 철저한 언어통제를 시행했다. 이로써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민족이 아닌 언어라는 새로운 경계가 그어졌다. 근대국가로 급변하는 길목에서 맞이한 일제의 낯선 식민지 법률과 새로운 언어는 가장 가혹한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작용했다. 일제는 근대사법시스템을 대표하는 재판을 통해 식민통치를 정당화했고 이로 인해 식민지 한국인에게 재판은 일상적인 일로 수용되었다.[24] 억압적인 식민지 법률과 국어라는 이름의 외국어,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곳은 식민지하 법정이었다. 소수의 일본인을 제외하고 다수가 '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판은 '국어를 사용하는 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국어사용에 저항하는 자'에게는 가차 없이 제재가 가해졌다.

한편 국어를 사용하는 자와 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 그리고 가혹한 식민통치법을 적용하려 하는 자와 그 법에 저항하는 자 간의 곤혹스런 자리에는 법정통역사들이 있었다. 흔히 식민지하 이중언어자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부정적인 평가와 시선이 존재한다. 일제강점기 법정통역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피식민국 사법부를 대신해 피고인을 압박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하여 식민지인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유창한 외국어 능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활용하여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모습도 발견된다. 또한 재판절차와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모국어로 설명하거나 피고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생략하는 등 법률대리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준다.

한편 일제강점기 법정통역사들이 제대로 된 통역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24) 문준영(2010)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 거주한 미국인 헐버트가 당시 한국의 법정이 한국인에게 친한 곳이 아니었음에도 한국인들이 툭하면 '재판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에 일본인 법률가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www.kci.go.kr

불구하고 법정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일제치하 법학전문교육기관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외국어를 통해 근대법률을 수학한 전문 법률가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재판과정 내내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낸 데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현재 법정통역사의 역할과 가시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통역학자들은 사법통역사들의 통역 기계같은 역할은 반대하면서도 문화중재를 포함한 부가적 역할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편이다(이지은 2011). 그러나 이는 이미 법정통역사가 부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재와 배치되는 것이며, 그 경계점이 어디인지도 상당히 모호하다. 또한 절대적 중립과 도관식 통역을 강조하는 것은 대개 사법인 중심적 시각이기도 하다.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지 오래된 오늘날 식민지 법정통역사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사실상 최초의 전문적인 법정통역사였다는 점에서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비가시적 도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법정통역의 실상과 미비한 사법통역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사법통역도 결국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인 만큼 통역사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구성원 모두 법정통역사가 도관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역사의 역할규정과 위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정통역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서는 법정통역사를 재판과 무관한 독립적인 개체가 아닌 재판 구성원의 온전한 일원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정통역사가 문화적 중재를 비롯해 부수적 역할을 하는 데에 따른 위험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법정통역사를 양성하는데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격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역사를 기용하면서 오역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양성하는 것이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법통역교육의 경우,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단기간의 속성 교육이 아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통역교육과 법률교육을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통번역교육기관 및 법학교육기관 그리고 사법부의 공조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참고문헌

곽중철 옮김 (2009)『의료통역 입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Angelelli Claudia 2004, *Medical interpreting and Cross-cultural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강명숙 (2009).「일제시대 제 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교육사상연구』 23(3): 27-53.

김경균 (1989)「일제시기 법제사연구의 새로운 전환」,『법사학연구』 10: 205-208.

김경수 (2016)「日帝 強占期의 模擬裁判劇 硏究」,『어문논집』 44(4): 155-180.

김권정 (2005)「同化와 抵抗의 기억-식민지 조선의 일어」,『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123-159.

김승태 (2018)「재판속의 3 1운동」,『기독교사상』 711: 23-33.

김호연 (2011)『일제하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교육과 학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효전 (2003)「법관양성소의 교수진(1)」,『인권과 정의』 323: 87-108.

김효전 (2003)「법관양성소의 교수진(2)」,『인권과 정의』 324: 87-109.

문준영 (2010)『법원과 검찰의 탄생』, 고양: 역사비평사.

박정원 (2005)「日帝의 3 1 独立運動 裁判에 대한 法適用과 影響」,『법학논총』 17: 271-295.

鈴木敬夫 (2007)「조선식민지통치법의 성격: 치안유지법의 해석과 적용」,『법학논총』 31(1): 3-35.

안성훈, 이지은 (2012)『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양성숙 (2009) 제6장 105인 사건과 서대문형무소 연구」,『민족사상』 3(1): 199-252.

이경훈 (1998)「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법의 문제」,『한국문예비평연구』 2: 287-306.

이연숙 옮김 (2005)『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파주 : 돌베개. (미우라 노부타카 (2000)『言語帝国主義とは何か』, 東京: 藤原書店.)

이유진 (2015)『한국 형사재판 법정통역사의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중국어 통역 담화분석 및 통역사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논문. 한국외

www.kci.go.kr

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논문.
이유진 (2016)「한국 법정통역인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통역과 번역』 18: 111-136.
이연숙 (1989)「근대일본과 언어정책-保科孝一를 중심으로 ,『일본학보』22: 3-26.
이재상 (2007)『신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이지은 (2011)「사법인들과 통역인들의 사법통역 규범에 관한 인식 연구」,『번역학 연구』12(3): 197-224.
이지은 (2013)「사법통역 교육에 관한 실행연구: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 운영 사례」,『번역학 연구』14(5): 195-223.
이지훈 (2014)「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법의 의미 연구」,『한국현대문학연구』42: 353-382.
이혜령 (2011)「문지방의 언어들」,『한국어문학연구』54: 45-98.
장신 (2013)「일제하 조선에서 법학의 교육과 연구」,『향토서울』85: 176-221.
정긍식 (2015)「근대 한국 법학교육 제도사」,『법교육연구』10(3): 97-140.
정근식 (2005)「식민지 검열체제의 역사적 성격: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대동문화연구 51: 1-44.
정근식, 최경희 (2006)「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한국문학연구』30: 103-169.
정진석 (2004)「언론통제 검열기구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관훈저널』93: 83-105.
정재철 (1989)「일제하의 고등교육」,『한국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5: 37-109.
최경옥 (2007)「일제시대의 사법제도」,『동아법학』39:1-22.
최기영 (2001)「한말 법관양성소의 운영과 교육」,『한국현대사연구』16: 39-75.
최영희 (1969)「주한일본공사 관기록 수록 '한말관인의 경력일반'」,『사학연구』21: 379-416.
최종고 (1982)「한말의 서양인 법률고문제도」,『동방학지』32: 149-225.
최종고 (1990)『한국 법학사』, 서울: 박영사.
최철 (2009)「법정통역의 법적 의위와 제도화에 관한 고찰 －미국 판례와 적정절차의 원칙을 중심으로」,『통번역학연구』12(2): 257-270.
한용진 (2005)「근대 한국 법학전문교육에 관한 고찰」,『대학의 역사와 문화』2: 100-120.

www.kci.go.kr

한인섭 (2012)『식민지법정에서 독립을 변호하다』, 서울: 경인문화사.

강현석, 김경수(역) (2010)『이야기 만들기: 법, 문학, 인간의 삶을 말하다』, 서울: 교육과학사. (Bruner, Jerome 2003 *Making Stories: Law, Literature, Lif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erk-Seligson, Susan (1990) *The Bilingual Courtroom: Court Interpreters in the Judical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avidson, Brad (1998) Interpreting Medical Discourse: A Study of Cross-linguistic Communication in the Hospital Clinic.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Fabian, J (1986) *Language and colonial power: the appropriation of Swahili in the former Belgian Congo*, 1880-193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tzger, M (1999) *Sign Language Interpreting: Deconstructing the Myth of Neutrality*.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Roy, Cynthia (1989) A sociolinguistic analysis of the interpreter's role in the turn exchanges of an interpreted event, PhD dissertation.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Wadensjö Cecilia (1998) *Interpreting as Interaction*,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Inc.

관보 http://e-kyujanggak.snu.ac.kr/

근대 및 일제치하 교육법령 http://www.law.go.kr/main.html

대한제국관원이력서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m

동아일보 아카이브 http://newslibrary.naver.com/

조선총독부관보 http://gb.nl.go.kr/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Court Interpreters under the Japanese Imperial Colonization

Yu, Jung-hw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emerging background of the court interpreters under Japanese Imperial colonial rule, the curriculum and the activities in the actual court, and to reconsider the meaning and role of court interpreters. The powerful means of Japanese Imperial colonial rule were the colonial law and language control. Although the Japanese Imperial expressed the rule of law and actively used the modern judicial system, judge, prosecutor, lawyer except the defendant was usually Japanese, and all proceedings in the trial were conducted in Japanese. The twentieth century was a chaotic situation that followed the rapid modernization of the judicial system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n the colonial rule of Imperial Japan. Under such unfamiliar laws and language constraints, court interpreters were the only ones able to represent the statements and positions of the colonel defendants, and court interpreters were an indispensable member of the Joseon court under the Japanese Imperial colonization. Court interpreters of Colonial Joseon were not temporary members with excellent language skills, but professional experts who learned modern legal knowledge in professional law schools. Unlike today's court interpreters, who are forced to play a thorough moral official, they were more active "visible" beings, such as describing difficult modern legal terms and appropriately reconstructing judge questions and defendant answers.

www.kci.go.kr

▸ Key Words: court interpreter, Japanese Imperial Colonization, modern law school, education for court interpreter, visibility
▸ 주제어: 법정통역, 일제강점기, 근대법학교, 법정통역사 교육, 가시성

유정화
한국외대 한노과 시간강사
jh9905@hanmail.net
관심분야: 통번역사, 통번역 교육사, 문화 간 소통, 러시아어 통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5일

www.kci.go.kr